

## 결 정

2018 - 3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 
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

## 주 문

코리아헤럴드(koreaherald.com) 2018년 1월 4일자 「(영상) ‘절체절명’ 호랑이의 절묘한 반격」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# 이 유

1.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『(영상) ‘절체절명’ 호랑이의 절묘한 반격

Published : Jan 4, 2018 - 16:01 Updated : Jan 5, 2018 - 09:52

국내 최대 동물원에서 왕좌를 놓고 뜨거운 한판이 벌어졌다.

갈기 잔뜩 기르고 백호한테 도전장을 내민 수사자.

너석은 싸울 준비가 덜 된 호랑이를 가차없이 몰아붙였다. 굴에서 낮잠 자던 상대를 불시에 불러낸 직후의 사건이다.



(사진=온라인커뮤니티)

하지만 거기까지였다. 타이틀 방어에 나선 최강자가 자리를 순순히 내줄 리 만

무하다. 호랑이는 초반에 고전했으나 몸이 한결 풀린 모습이다.

회심의 도전자 사자는 결국 상대의 송곳니에 콧구멍만 췌뜩고 물러났다.

이는 지난 90년대 상당한 인기를 누린 TV프로그램 영상이다. (1' 40" 지점 / 동영상출처=유튜브)



(khnews@heraldcorp.com)

(khnews@heraldcorp.com)』

<[http://khnews.kheraldm.com/view.php?uc=20180104000796&md=20180107003217\\_BL&kr=1](http://khnews.kheraldm.com/view.php?uc=20180104000796&md=20180107003217_BL&kr=1)>

※참고 : 네이버 뉴스스탠드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90년대 상당한 인기를 모은 TV 프로그램의 영상으로 국내 동물원에 서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을 찍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. 그러나 함께 게재한 사

진은 벼랑 끝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맞선 상황으로 동영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장면인데,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올려 실제 상황인 것처럼 오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. 출처도 막연히 ‘온라인 커뮤니티’라고만 밝혔다.

위 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임에도, 이를 사진설명으로 밝히지 않았다.

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⑥(관계사진 게재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⑥(관계사진 게재)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.